

의안번호	제 216 호
의 결 연 월 일	2015년 월 일 (제 342 회)

**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
일부개정조례안**

발 의 자	윤은희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5년 8월 24일

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윤은희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6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5년 8월 24일

발 의 자 : 윤은희, 임희무, 엄재창
김영주, 연철흙, 최광옥,
이양섭

1. 개정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시행에 따라 법령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,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재단 설립의 근거를 「문화예술진흥법」에서 「지역문화진흥법」으로 변경(안 제1조)
- 재단의 목적사업에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 관광사업 수행 근거 마련(안 제5조)
- 재단 임원 정수를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규정하고, 임원의 임면에 대하여는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 하도록 함(안 제6조)

- 사무국을 사무처로 변경함(안 제7조)
- 재단의 사업계획과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, 결산서는 다음 해 3월말까지 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(안 제12조, 제13조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(안 제4조 등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19조, 제22조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제18조, 제19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합 의 :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와 협의하였음.
- 라. 기 타
 - (1) 입법예고 :
 - (2) 규제심사 결과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.

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충북문화재단” 을 “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라 충북문화재단” 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「민법」 제32조 및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4조제2항” 을 “「민법」 제32조” 로 한다.

제4조제7호 중 “임면” 을 “임면(任免)” 으로 한다.

제5조제3호 및 같은 조 제6호 중 “문화예술진흥” 을 각각 “문화·예술·관광 진흥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

제6조 중 “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” 를 “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며” 로 하고, “정관으로” 를 “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하여 정관으로” 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중 “사무국” 을 “사무처” 로, 같은 조 제2항 중 “겸임토록” 을 “겸임하게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와 소속 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9조 중 “운영” 을 “재단의 운영” 으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충북문화재단” 을 “재단” 으로, “얻어야” 를 “받아야” 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정부” 를 “충청북도” 로 한다.

제12조 중 “2개월” 을 “1개월” 로, “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” 를 “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” 로, “때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” 를 “때에도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” 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2월말” 을 “3월말” 로, 같은 조 제2항 중 “도민에게 공개한다” 를 “공개하여야 한다” 로 한다.

제15조제2호 중 “허위” 를 “거짓” 으로 한다.

제16조 중 “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” 을 “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” 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확대와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<u>충북문화재단</u> 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·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확대와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「 <u>지역문화진흥법</u> 」 제19조 제2항에 따라 <u>충북문화재단</u> 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·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법인격 및 명칭) ① <u>충북문화재단</u> 은 「 <u>민법</u> 」 제32조 및 「 <u>문화예술진흥법</u> 」 제4조제2항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. ② (생략)	제2조(법인격 및 명칭) ① <u>충북문화재단</u> 은 「 <u>민법</u> 」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. ② (현행과 같음)
제4조(정관)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1. ~ 6. (생략) 7. 이사·감사의 <u>임면</u>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. ~ 11. (생략)	제4조(정관)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이사·감사의 <u>임면(任免)</u>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. ~ 11. (현행과 같음)
제5조(사업) (생략) 1. ~ 2. (생략) 3. <u>문화예술진흥</u> 을 위한 정책개발·자문 및 교육·연구 사업 4. ~ 5. (생략) 6. <u>문화예술진흥</u> 을 위한 정부기관 또는 자치단체 위탁 사업 (신설) 7. 그 밖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	제5조(사업) (현행과 같음)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<u>문화·예술·관광진흥</u> 을 위한 정책개발·자문 및 교육·연구 사업 4. ~ 5. (현행과 같음) 6. <u>문화·예술·관광진흥</u> 을 위한 정부기관 또는 자치단체 위탁 사업 7. <u>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</u> 사업 8. 그 밖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

<p>제6조(임원 등) 재단의 임원은 <u>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, 임원의 정수,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</u></p>	<p>제6조(임원 등) 재단의 임원은 <u>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며, 임원의 정수,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하여 정관으로 정한다.</u></p>
<p>제7조(사무국의 설치) ① <u>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정관에 따라 사무국과 직원을 둘 수 있다.</u> ②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<u>겸임토록</u> 할 수 있다.</p>	<p>제7조(사무처의 설치) ① <u>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와 소속 직원을 둘 수 있다.</u> ②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<u>겸임하게</u> 할 수 있다.</p>
<p>제9조(출연금 등) 도지사와 시장·군수는 재단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, 도지사는 <u>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</u>를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제9조(출연금 등) 도지사와 시장·군수는 재단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, 도지사는 <u>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</u>를 지원할 수 있다.</p>
<p>제10조(정관의 변경 등) 정관의 변경 등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<u>충북문화재단</u>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<u>도지사의 허가</u>를 얻어야 한다.</p>	<p>제10조(정관의 변경 등) 정관의 변경 등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<u>재단</u>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<u>도지사의 허가</u>를 받아야 한다.</p>
<p>제11조(회계연도) 재단의 회계연도는 <u>정부의 회계연도</u>를 따른다.</p>	<p>제11조(회계연도) 재단의 회계연도는 <u>충청북도의 회계연도</u>를 따른다.</p>

<p>제12조(사업계획 승인 등)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<u>2개월</u>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, 이를 변경할 <u>때는 사전에</u>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	<p>제12조(사업계획 승인 등)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<u>1개월</u> 전까지 도지사에게 <u>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</u> 하며, 이를 변경할 <u>때에도 미리</u>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
<p>제13조(결산서 제출 등)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<u>2월말</u> 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② 재단은 제1항의 사업실적 및 결산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<u>도민에게 공개한다.</u></p>	<p>제13조(결산서 제출 등)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<u>3월말</u> 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② 재단은 제1항의 사업실적 및 결산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<u>공개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15조(재단에 대한 제재) (생략) 1. (생략) 2. 사업 및 회계 등과 관련하여 <u>허위</u> 보고를 하였을 때 3. (생략)</p>	<p>제15조(재단에 대한 제재)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사업 및 회계 등과 관련하여 <u>거짓</u> 보고를 하였을 때 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6조(준용) 재단의 설립·운영에 관하여 이 <u>조례에</u> 규정되지 <u>아니한</u> 것은 「민법」 등 관계 법령과 정관을 따른다.</p>	<p>제16조(준용) 재단의 설립·운영에 관하여 이 <u>조례에서</u> 규정하고 <u>있지</u> <u>아니한</u> 사항에 대해서는 「민법」 등 관계 법령과 정관을 따른다.</p>

관련법령 발취

□ 지역문화진흥법

제19조(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·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,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22조(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용·관리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16조(회계연도) 출자·출연 기관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18조(예산의 편성 등) ① 출자·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 하고,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.

제19조(결산) 출자·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